

2026년 재단법인 김해에프씨 인턴 채용 **정정** 공고

본 공고는 우수 인재의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해 기존 채용 공고의 지원자격을 정정한 공고로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음

기존			정정		
구분	자격요건	충족기준	구분	자격요건	충족기준
공통자격	○ 미취업자로 34세 이하인 자	모두 만족 (공고일 기준)	공통자격	○ 34세 이하인 자	모두 만족 (근무시작일 기준)

재단법인 김해에프씨에서 아래와 같이 인턴을 채용합니다.

2026년 4월 21일

재단법인 김해에프씨 이사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소속	직무(팀)	직위	주요 업무	인원	비고
재단법인 김해FC	행정지원	인턴	행정지원팀 업무 보조	1	체험형 인턴 (6개월 근무)
	홍보마케팅		홍보마케팅 업무 보조	2	
	선수단지원		선수단 의무 업무 보조	1	

가. 본 채용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프로스포츠 인턴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 지원을 받음

나. 본 채용은 체험형 인턴십으로 근로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지 않음

다. 선발 예정 인원보다 응시인원이 적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업무분장은 재단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등

가. 지원자격

구분	자 격 요 건	충족 기준
공통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세 이하인 자 ○ 심신이 건강하여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채용 시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대학 재학생 불가(단, 아래 조건 중 하나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재학생 - 근무시작일 기준 졸업예정자 - 휴학기간이 인턴기간보다 긴 미취업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 이행자 또는 면제자 ○ 재단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다. 참고) 	모두 만족 (근무시작일 기준)
선수단 지원팀 지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인 물리치료사 ○ 건강운동관리사 ○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R-KATA) 자격증 ○ 스포츠의학 관련 학부를 졸업하고 1년 이상 의무트레이너 업무 경력을 보유한 자 ○ 대학병원 스포츠의학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한자 중 한국프로축구연맹 의무위원회가 자격을 인정한 자 ○ 기타 한국프로축구연맹 의무위원회가 자격을 인정한 자 또는 승인한 자격증 보유자 	하나 이상 만족 (공고일 기준)

나. 지원불가 조건

지 원 불 가 조 건	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김해FC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자 ○ 타 인턴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중인 자 ○ (재)김해FC의 소속으로 ‘프로스포츠 인턴십 프로그램(2018 ~ 2026)’에 참여한 자 ○ 타 프로스포츠 단체 및 구단 소속으로 ‘2026년 프로스포츠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다. 결격사유

「재단법인 김해FC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5의 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출자·출연기관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라. 우대조건

구분	자 격 요 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각 전형 만점의 10% 가점 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각 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1) 취업지원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일 경우 미가산
- 2)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 초과 가점 합격 금지
 - 가)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 미적용
 - 나)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적용 가능

3 보수 및 근로 조건

가. 채용형태: 인턴

나. 보수수준: 월 2,156,880원 + 160,000원(식비)

- 1) 보수 중 150만원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지원금으로 충당
- 2)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해당 시) 지급, 복지포인트 도입 예정

다. 근무기간: (예정) 2026. 5. 중순 ~ 2026. 11. 중순 / 6개월

※ 근무평가에 따라 12월 말까지 자체예산으로 계약 연장 가능

라.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1일 8시간(09:00 ~ 18:00)

- 1) 근무일 및 근로시간은 경기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2) 구단 업무의 특성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수 있음
- 3) 휴일에 발생한 근로에 대해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휴일근로로 인정하지 않음(단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고지)

마. 근무장소: 김해FC 사무국* 외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243, 김해종합운동장 1층

4 전형절차

가. 전형별 평가방법

구분	평가방법
서류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 심사○ 평정요소: 4개 항목, 총 100점 만점 ▲ 문서 작성 역량(20) ▲ 직무 관련 경력/경험(20) ▲ 직무 적합성(30) ▲ 직무 수행 계획(30)○ 합격기준<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면접 대상자를 선발- 동점자로 인해 면접 대상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일 경우 지원자격 적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음

면접
전형

- 면접 대상자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정요소: 5개 항목 각 5점, 총 25점 만점
 - ▲ 업무 추진을 위한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 합격기준
 - 총점 15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총점은 가점을 포함하여 계산하나 가점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점수로 계산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는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결정 중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 → 서류전형 평가점수 우수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나. 기타 정보

- 1) 합격자 발표: 구단 누리집 및 클린아이 잡플러스 등에 게시
- 2)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가) 운영목적: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함
 - 나) 운영방법: 결원 발생 시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임용
 - 다) 운영규모: 선발 예정 인원 3배수 이내
 - 라) 유효기간: 최종합격자의 임용일 기준 3개월
 - 마) 주의사항: 최초 채용 분야, 순번 임의변경 불가

5

채용일정

※ 일정은 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26. 4. 21.(화) ~ 4. 28.(화)	누리집 게시 (구단, 시, 클린아이 잡플러스)
서류심사	'26. 4. 30.(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 5. 6.(수)	누리집 게시 (구단, 시, 클린아이 잡플러스)
면접심사	'26. 5. 8.(금)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6. 5. 11.(월)	누리집 게시 (구단, 시, 클린아이 잡플러스)
임용대상자 임용등록	'26. 5. 12.(화) ~ 5. 13.(수)	평일에 사무국 방문
근무 시작 예정일	'26. 5. 14.(목)	

6 접수방법 및 서류제출

가. 접수기간: 2026. 4. 21.(화) ~ 4. 28.(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전자우편 접수 ※ 전자우편 주소: ghfc2008@gimhaefc2008.com

1) 전자우편 제목: ‘직무-직위-성명’순으로 기재하여 제출

2) 제출서류는 모두 자필서명(이름을 정자로 기재)하여 일괄 스캔 후 1개의 pdf파일로 제출 ※ 파일명: 행정지원-인턴-홍길동.pdf

다. 제출서류 목록

제출시기	제출서류	비고
입단지원 시 (작성서류)	1. 응시원서	서식 1호
	2. 입단지원서	서식 2호
	3. 자기소개서	서식 3호
	4. 직무수행 계획서	서식 4호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5호
	6.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서식 6호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서식 7호
	8. 서약서	서식 8호
입단지원 시 (증빙서류)	1.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생 불가 검증
	2. 휴학증명서(해당자만)	재학생 불가 예외 검증
	3. 주민등록초본(남성만)	병역사항 표기(주소이력 불필요)
	4.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지원불가 조건 검증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만)	경력 검증
	6.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명서(해당자만)	경력 및 자격 검증
	7.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만)	우대조건 확인
면접심사 시	1. 신분증 ※ 신형 여권의 경우 여권과 함께 여권정보증명서도 지참	본인 확인, 미지참 시 면접응시 불가

※ 지원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서식 1~8호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라. 경력증명서 등 발급 시 유의사항

- 1)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징계여부 등을 명시(발급기관 직인 날인)
- 2) 증빙서류가 없거나 서류상 미기재로 판정이 불분명한 경력 불인정
- 3)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는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 조건(키, 체중, 용모 등), 학교명, 재산 등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은 기재를 금합니다.

- 1) 기재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감점(최대 -10점)을 받거나 불합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2) 단, 서식 1호 응시원서는 제외되며, 본인 확인 및 응시 정보 확인을 위해 수집한 증빙서류는 심사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나. 공고된 응시서류 소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에서 감점(최대 -10점)을 받거나 불합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 채용 분야 중 1개 분야, 1개 직위(직급)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라. 응시서류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해야 하므로 서류의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는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

마. 동일기간 중복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무경력 확인은 경력증명서의 해당 실무내용 기재부분만 인정합니다.

바. 외국 기관 발급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마감일(시간) 이후 접수, 지원서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과 손해의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 제출서류 내용(경력, 학력, 자격 등) 허위 작성, 증빙서 위변조, 인사 청탁 등으로 인한 비위 사실 적발 등을 통해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후에도 이를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하며,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합니다.

자. 채용시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서식 9호)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ghfc2008@gimhaefc2008.com

차.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관련 지침을 준용하여 마련된 방안에 따라 피해자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본 채용에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180일간 보관하며,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하고자 하는 불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 10호)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ghfc2008@gimhaefc2008.com

타.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1)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최종합격자의 임용일 기준 3개월

2) 예비합격자 규모: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

파.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구단 규정에 따릅니다.

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재)김해FC 사무국(☎ 055-330-2637)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본인은 재단법인 김해에프씨 (기간제) 근로자(인턴 포함) 채용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심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심사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재단법인 김해에프씨 이사장 귀하

접수번호		성 명	(한글)
채용분야	ex) ○○○○팀	채용직위	인턴
생년월일	년 월 일	성 별	
현 주소	(☎)		
전자우편			
휴대전화			

응시표

접수번호		채용분야	ex) ○○○○팀
성 명	(한글)	채용직위	인턴
2026년 월 일		담 당 자	(인)

유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접수번호 기재 및 담당자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15분 전까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 성 요 령 >

가. 접수번호: 기재하지 않음

나. 성 명: 한글로 기재

다. 분야/직위: 응시하고자 하는 채용 분야 및 직위를 기재

라. 현 주 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하게 기재

마. 생년월일, 성별, 전자우편, 휴대전화: 본인 확인, 연락사항 전달 등을 위해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3. 응시표를 받는 즉시 접수번호 기재 및 담당자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접수번호가 기재되고 담당자 날인이 된 응시표를 지참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분실하였을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합니다.

입 단 지원 서

1. 인적사항

지원구분	인턴	채용분야		접수번호	
성명	(한글)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가점항목	<input type="checkbox"/> 취업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input type="checkbox"/> 자격증 보유자()		<input type="checkbox"/> 경력 보유자()		
	<input type="checkbox"/> 기타의 경우() ※ 선수단지원 분야만 기입				

자격 요건 주요 내용
공고문 자격 요건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 학교명은 미기재 (이 설명은 삭제 후 기재)

2. 교육사항

* 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이 설명은 삭제 후 제출)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무 관련 주요 내용

3. 자격사항

* 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기재(이 설명은 삭제 후 제출)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서식】 ※ 자필 서명 후 스캔본 제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재)김해FC의 입사지원과 관련하여 (재)김해FC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채용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프로스포츠 인턴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사 전형 진행, 채용 자격·경력 확인 등 심사
수집·이용할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 자격·경력 사항, 수상 내역,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여부 · 기타 지원서상에 기재된 정보 또는 지원자가 제공한 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u>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전형 종료일 이후 180일까지 보관됩니다.</u>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별도의 요구 없이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심사가 불가능하므로 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본인은 (재)김해FC (기간제) 근로자(인턴 포함)로 채용됨에 있어 다음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재단법인 김해FC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 1.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5의 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6. 출자·출연기관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재)김해FC 이사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p>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p> <p>*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p>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p> <p>*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p> <p>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p> <p>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p> <p>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p> <p>*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p>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p>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p>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p>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p>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p>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1, 2, 3-1, 3-2 (모두 충족) ⇒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u></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p>1, 2, 4-1, 4-2, 4-3 (모두 충족) ⇒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u></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서약서

1. 응시 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응시원서, 입단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합격자 발표 후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 나.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 다.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 라.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
4.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재단법인 김해에프씨 (기간제) 근로자(인턴 포함) 채용시험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학위, 경력,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6. 본인은 위 주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채용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일체 비밀로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명 (서명)

재단법인 김해에프씨 이사장 귀하

채용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채용분야		성 명	
지원직위		연락처	
이 메 일			
채용단계	<input type="checkbox"/> 서류 전형, <input type="checkbox"/> 면접 전형		
이의신청 내용	사실에 근거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기술		

상기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채용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김해에프씨 이사장 귀하

신청 시 유의사항

1. 채용시험과 관련한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사항을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 서명·날인이 없거나 기한 내 미제출 시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비공개 정보(다른 응시자의 성적·결과, 면접 문항, 면접 점수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단순문의 및 질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3. 신청은 이메일, 회신은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진행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김해에프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